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성평등가족위원회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현장조사 방해자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에서 형벌로 상향 >
▣ 위성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760호)

2026. 2.

성평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2

1. 현장조사 방해자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에서 형벌로 상향 ····· 2

Ⅰ.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위성곤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9. 5.
3. 회 부 일 : 2025. 9. 8.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스토킹 가해자가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 처분만 있어 가해자가 과태료 납부 의사를 표하며 조사를 방해·거부할 경우, 사법경찰관은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안은 없는 실정임.

이에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등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에서 벌칙으로 상향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6조 등).

Ⅲ. 검토의견

1. 현장조사 방해자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에서 형벌로 상향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스토킹 신고 관련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현재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제1호 신설 및 제18조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벌칙) ① (생 략) ② 제15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제18조(과태료) ①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	제1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 2. 제15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자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현행법 제14조[1]는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누구든지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제18조는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 시행(2023. 7.18.) 이후 2025년 12월말 기준으로 현장조사를 방해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아직 없는 실정임.

개정안은 스토킹 관련 현장조사 방해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과태료

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①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스토킹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과태료) ①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행정질서벌)에서 벌금(행정형벌)으로 상향함으로써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행정형벌은 행정법규 위반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경우 그 의무위반자에 대해 「형법」 제41조[2]에 규정된 형을 과하는 것이고, 행정질서벌은 행정법규 위반이 간접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장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의무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3],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도입하려는 경우 의무위반의 성질·태양이 어떠한지, 해당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수단을 사용하고 있고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 사법경찰관리 또는 피해자 지원기관 직원 등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제재를 하고 있는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처럼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처럼 형벌을 부과하는 사례가 모두 존재함.

---

2)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3) 국회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2024. 5, 752쪽.

< 현장조사 거부·기피 또는 업무수행 방해 관련 입법례 >

구분	근거법조항	조사주체	의무위반 행위	제재 수단
과태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2호	사법경찰관리	현장조사 거부 등 업무 방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사법경찰관리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 방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3호의5	사법경찰관리, 장애인권익 옹호기관 직원	현장조사 거부·기피 또는 업무 방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3호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현장조사 거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형벌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	사법경찰관리, 피해자권익보호 기관 직원	현장조사 거부 또는 업무 방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복지법」 제71조제3항제7호	관계 공무원 또는 전담공무원	조사 거부·방해·기피, 답변 거부·기피 또는 거짓답변, 아동의 답변 방해 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제1항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폭행·협박·위계·위력에 의한 업무 수행 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구성요건을 달리하여 형벌과 과태료 조항 둘 다 규정함.

개정안과 같이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지 여부는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 및 보호의 시급성, 가정폭력 등 다른 유사범죄 처벌과의 형평성, 현장조사 거부·기

피 행위의 죄질 및 가벌성 정도, 사법경찰관리의 수사남용 가능성, 현장조사 방해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개정안을 입법화할 경우에는 개정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음[4].

과태료를 형벌로 전환하면서 경과조치를 두지 않으면 개정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에게 유리한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5]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형벌 불소급 원칙 및 행위시법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6] 제1조제1항에 따라 형벌로도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두어 개정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가정폭력범죄 신고 관련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

---

4)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2024.5, 898쪽.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③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6) **「형법」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기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211호)」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3913호)」이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는 수사기관의 초기 대응력을 높여 스토킹 재발이나 강력범죄로의 확대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가 가능하므로 수용하나, 법제처 의견을 고려하여 부칙에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법제처는 과태료를 형벌로 전환하는 경우 경과조치를 두지 않으면 개정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형벌로도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므로 경과조치를 두고, 제14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가 제17조에 따른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법무부는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로 볼 수 있는 점,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한 조사 거부·기피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는 점, 유사 입법례를 참조할 때 신속성·실효성 있는 규제 방식인 과태료 부과로도 입법목적의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44